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4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권영진 · 복기왕 · 이상식
조계원 · 전용기 · 임호선
양부남 · 이성권 · 김상훈
김우영 · 윤종균 · 최혁진
민병덕 · 우재준 · 윤영석
김종양 · 김희정 · 염태영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당기순이익 34억원임에도 240억원을 배당(배당성향 698%)함.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 인수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C교통 153%p, E버스 240%p)하였고,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주로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됨. 서울·경기에서 사모펀드 인수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감축되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됨.

현행법 제23조는 운송시설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나 차고지 매각 금지 규정이 없고, 과도한 배당 제한 장치도 미흡함. 2023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차고지 매각 시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함.

이에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하며, 재정지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 편의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3항·제14항, 제21조의2, 제94조제1항제2호의2, 제96조 신설 및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는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까지”를 “제13항까지”로 한다.

⑬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는 「상법」 제462조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영건전성 또는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제3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제21조제13항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

다.

제9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한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영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공영제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u> ”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u>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 다만,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
는 자(이하 “준공영제 대상 운
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경
영 및 서비스 평가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다만, 준공영
제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
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는 공
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생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⑫ (생략)

<신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는 「상법」 제462조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영건전성 또는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⑭ ----- 제13항까지 -----

-----.

제21조의2(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제3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제21조제13항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

-----.

1. · 2. (생략) <u><신설></u> 3. ~ 5. (생략) ② ~ ⑤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6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한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 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 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
---	--